



# 2022년 상반기 형법 판례 총정리(1)

「~2022. 8. 15. 판례공보까지」

| 양 건 교수 | 박문각 경찰온라인



## < 총 론 >

- 01. [소급효금지의 원칙]** 균형법상정치관여죄는 2014. 1. 14.자 법률 개정을 통해 구성요건이 세분화되고 법정형이 높아짐으로써 그 실질이 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고 공소시효 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인 개정 균형법 제94조 제2항은 개정 균형법상의 정치관여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개정 균형법 제94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은 개정 균형법 시행 후에 행해진 정치관여범죄에만 적용된다. (대판 2021.9.9, 2019도5371).
- 02. [소급효금지의 원칙]**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5조는 제26조의 적용 예외 사유의 하나로서 제3호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열거하였다.)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2.2.11, 2020도68) ∴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이미 불처벌 대상이었던 사용자의 신뢰보호의 이익까지 크게 해치게 되어 그 규정 취지에 반한다.)
- 03. [소급효금지의 원칙]**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 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경우,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22.6.9, 2021도14878).
- 0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 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알선’이라고도 한다)하는 행위를 뜻하고,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도 대부중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21.11.25, 2017도641).
- 05. [유추해석금지의원칙]**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

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판 2021.12.16, 2020도9789) ∴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甲의 특정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 배임죄 × ∴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甲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다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甲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甲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06.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①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에 따른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22.1.13, 2015도6326).
  - ②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은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22.1.13, 2015도6326)
- 07.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범죄행위인 ‘수입’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입에 따른 ‘수입사무의 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판 2021.11.25., 2017도18693)
- 08.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법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법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21.11.25, 2021도10981)
- 09.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법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 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

되는 형법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판 2022.3.11., 2018도18872) ∴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8조의 제3호 (라)목에서 정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이란 게임제공업자로부터 게임물을 제공받은 공중이 게임물의 제작 목적인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위해 게임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게임머니 등을 획득하기 위해 일반적이 아닌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는 것을 뜻하고, 게임제공업자 내부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게임머니 등을 생산·획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10.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의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대판 2022.3.31, 2022도755).
- 1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을 하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이상 구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었거나 수입 통관절차에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되었더라도 위 대행업에 해당하는 이상 수입신고가 필요하다(대판 2022.4.14, 2021도2046).
- 1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 해당한다(대판 2021.4.8, 2021도1177).
- 1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판 2021.9.30., 2019도110).
- 14. [유추해석금지의원칙]**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행위자가 얻은 이익으로서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것 전부를 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이후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까지 이루어진 실제 거래로 이미 발생한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과 그 시점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이하 ‘미실현이익’이라 한다)이 모두 포함된다(대판2021.9.30, 2021도1143).



※ 관령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